



의안번호	제2호
------	-----

**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
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2. 13.

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의 용어로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 : 2018. 12. 19. ~ 2019. 1. 8. 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소관부서 : 교육법무담당관(041-635-2143)

- 관련공문 :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-11594호(2018.10.10.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
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」의 개정)「논산시공영개발사업
설치운영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, 제18조 제목 및 제목 이외의 부분 중 한자어 “계리”를 각
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」의 개정)「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
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목 중 한자어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참 여 예 산 실 장	박 찬 해
	의 회 법 무 팀 장	조 영 국
	담 당 자	안 상 돈 (041-746-5083)

제2조(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)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계리상황의 보고)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회계처리상황의 보고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.

4. 작성자

참여예산실장 박찬해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